수 강 료 반 환 신 청 서

과 정 명			
과 정 개 강 일			
성 명		생년월일	
휴대전화		자택전화	
주 소			

수 강 료 환 불 계 좌 내 역

은 행 명		계좌번호	
수 강 료		반환금액	
예 금 주	※ 수강생 본인 명의의 통장에 한함		

상기 본인은 _____ 사유로 인하여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 (인)

거제대학교 RISE추진사업단 귀하

※ 본 신청서에 의해 본 대학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반납 조치함.

참가비 반환기준 (※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관련)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1. 법 제28조 제 4항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있는 경우		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낸 참가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법 제 28조 4항 제 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	가. 참가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수업시작 전	이미 낸 참가비 전액 □
		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	이미 낸 참가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□
		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 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	이미 낸 참가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□
		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아니함 □
	나. 참가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수업시작 전	이미 낸 참가비 전액
		수업시작 이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		1. "참가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 참가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. 2. "총수업시간"이란 참가비 징수기간 중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. 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	

거제대학교 GEOJE UNIVERSITY